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7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전도현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 주요현안 및 과제에 관하여 자문 기능을 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수를 기존 “20명”에서 “10명”으로 축소하고,
-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, 시의회의 비판·감시·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에 위촉하는 시의원의 수를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다각화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위원회 구성인원을 “20명”에서 “10명”으로 수정(안 제3조제2항)

-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(안 제3조제4항)
-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대하여 규정(안 제8조의2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3년 11월 22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32
 - 전자메일 : kbh0810@korea.kr

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20명”을 “10명”으로, “구성하되, 인원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”를 “구성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 중”을 “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중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가, 시민, 시의원, 시 소속 직원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가, 시민 및 시 소속 직원
2.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
3. 전·현직 학계 및 법조계, 언론계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4. 사회단체 등 지역에서 덕망 있고 대표성 있는 사람
5. 그밖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기획경제 분과위원회
2. 교통도시환경 분과위원회
3. 복합문화복지 분과위원회

-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인원은 3명 이내로 한다.
-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.

제3조(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 장 1명을 포함한 <u>20명</u> 이내의 위 원으로 <u>구성하되, 인원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, 부위원 장은 <u>위원</u>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 위원은 <u>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가, 시민, 시의원, 시 소속 직원</u>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10명</u> ----- --- <u>구성한다.</u></p> <p>③ ----- -- <u>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중</u>---- -.</p> <p>④ ----- <u>다음 각 호의 사람</u> 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 별 전문가, 시민 및 시 소속 직원</u></p> <p>2. <u>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 원 2명</u></p> <p>3. <u>전·현직 학계 및 법조계, 언론계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</u></p> <p>4. <u>사회단체 등 지역에서 덕망 있 고 대표성 있는 사람</u></p> <p>5. <u>그밖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 람</u></p>

<신 설>

제8조의2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는

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
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
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기획경제 분과위원회
2. 교통도시환경 분과위원회
3. 복합문화복지 분과위원회

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
회의 인원은 3명 이내로 한다.

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
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
의결로 정한다.